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나422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나422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048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민조, 이대현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 곽내원, 남기욱, 오창완

변론 종결2022. 7. 5.

판결 선고2022. 8. 9.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048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47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2.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160,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일본 C 회사 제조의 컴퓨터 횡편기(모델명: D,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0대를 일본화 63,763,100엔(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5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소유권의 이전 및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 (1) 피고가 기계대금 전액을 완납하기 전까지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제7조 (2)에 따라 원고가 기계를 회수하여도 피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2) 피고는 기계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기계를 타에 양도, 점유이전, 기타 원고의 소유권 보존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는 기계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그 상황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시 기계에 PASSWORD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해지)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제2조의 기계대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는 기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원고는 회수한 기계의 잔존 가치를 원고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과 정산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10대를 인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분할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및 2015. 7. 10. 각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2015. 8. 7. 기계대금 입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해당 기계대금 지급이 곤란하다며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회수하여 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 및 기계 회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 10대를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잔존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피고의 잔여 매매대금채무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기계 10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기계 10대 중 4대(686번, 689번, 690번, 691번)의 가격을 1대당 일본화 3,800,000엔으로 정하여 원고가 회수해 가고 4대 가격인 일본화 15,200,000엔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기계대금 및 그 이자 합계 28,913,275엔(= 기계대금 일본화 27,963,100엔 + 이자 일본화 950,175엔), 부가가치세 32,709,436원으로 각 정산하고 이를 1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1) 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분할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자 2016. 12.경 원고가 이 사건 기계 10대 중 나머지 6대(695번, 687번, 688번, 692번, 693번, 694번)를 회수해 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24.경 위 6대를 회수하였다.2)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4. 이 사건 기계 10대 중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6대의 가격을 1대당 일본화 3,500,000엔으로 정하여 원고가 회수해 가고 6대 가격인 일본화 21,000,000엔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산한 잔여 매매대금은 총 117,160,249원(= 기계대금 81,441,843원3) + 부가가치세 32,709,436원 + 부품대금 3,008,970원)이다(이하 '이 사건 ① 주장'이라 한다).

나.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원고는 기계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기계의 잔존 가치를 원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기계대금과 정산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6대를 회수하면서 피고와 동의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였는바, 위 동의서 작성을 통한 서면통지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계 6대의 가격을 2016. 12. 기준으로 1대당 일본화 3,500,000엔으로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잔존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160,249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2. 24. 이 사건 기계 10대 중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6대의 가격을 1대당 일본화 3,500,000엔으로 정하여 잔존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①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한편,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또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정산약정의 성격 및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매매대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6대의 회수에 대한 '동의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야 하는바, 이 사건 정산약정의 문언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는 기계를 회수할 수 있고, 원고는 회수한 기계의 잔존 가치를 원고가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과 정산하기로 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2항)." 중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 부분은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을 포함한 전체 기계대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때 회수한 목적물의 가액과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의 합산액이 잔여 대금지급채무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 회수한 목적물의 가액과 기 지불받은 기계대금의 합산액이 잔여 대금지급채무액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의 잔여 대금지급채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기계 10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3. 10. 23.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어 원고는 위 기계를 모두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약정을 지키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각 지급기한을 연장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그로부터 2년 9개월 남짓 경과된 2016. 8. 5. 합의에 의하여 그 중 4대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4개월이 다시 경과된 2016. 12. 24.경 합의에 의하여 나머지 6대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표시는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해지'라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해제'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이 완료된 부분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한 것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 실행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②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갑 제11호증) 제6조 제7항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 해제 후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반환 당시의 자동차시가) +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을 계산한 돈을 손해로 배상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2항과 유사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이 사건 기계 10대 중 4대의 가격을 1대당 일본화 3,800,000엔으로 정하여 원고가 회수해 가고 4대 가격인 일본화 15,200,000엔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기계대금 및 그 이자 합계 28,913,275엔(= 기계대금 일본화 27,963,100엔 + 이자 일본화 950,175엔), 부가가치세 32,709,436원으로 각 정산하고 이를 14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분할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기계 10대 중 나머지 6대를 회수해 가는 것에 동의하여 원고가 2016. 12. 24.경 위 6대를 회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6대에 대하여는 회수 당시 정산에 관한 별도의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이 사건 기계 10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던 점, 그 중 4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던 점,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나머지 6대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불과 4개월 남짓 경과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6대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을 예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의 범위 (가) 이 사건 기계 6대의 회수 당시 평가액

이 사건 기계 6대의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환가할 수 있었던 회수 당시인 2016. 12. 24.경으로 봄이 상당하고4), 이 사건 정산약정이 원고에게 회수한 기계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닌 원고와 피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평가액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가 제시한 잔존가치 평가액(1대당 350만 엔)으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전에 회수된 4대에 대하여 합의된 평가액(1대당 380만 엔)이 나머지 6대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것도 아닌 바, 나아가 정당한 잔존가치 평가액에 대하여 본다.

당심의 중소기업은행 장안동 지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첨부된 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1년 제조 D 모델 1대의 2017. 7. 27.경 평가액은 42,688,000원이고 여기에 2017. 7. 당시 환율(100엔당 1011.9원)을 적용하면 4,218,598엔(1엔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② 2015년 제조 D 모델 1대의 2017. 9. 14.경 평가액은 39,744,000원이고 여기에 2017. 9. 당시 환율(100엔당 1,016.7원)을 적용하면 3,909,117원임을 알 수 있는바, 2013. 10. 2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기계 6대의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 그때는 아직 생산조차 되지 않았던 2015년식의 가액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2011년식의 중고기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 6대의 회수 당시의 평가액은 25,311,588엔(=4,218,598엔 × 6대) 이다.

(나) 정산의 범위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① 위 기계대금 및 그 이자 합계 28,913,275엔(= 기계대금 일본화 27,963,100엔 + 이자 일본화 950,175엔)에서 위 기계 6대의 평가액 25,311,588엔을 공제한 나머지 3,601,687엔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7. 5.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5) 환산한 34,769,605원(원 미만 버림, F은행 엔화의 기준 환율이 100엔 당 965.37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및 ② 부가가치세 32,709,436원의 합산액인 ③ 67,479,041원 (=34,769,605원 + 32,709,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원고는 위 정산의 범위에 부품대금 3,008,97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67,479,0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산약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정산약정 조항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회수 당시의 기계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원고의 자의에 맡기게 할 우려가 있어 약관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조항이 회수 당시의 기계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당연한 전제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1호 자동차(신차)매매약관(갑 제11호증) 제6조에서도 소유권유보부 매매(할부 매매)의 경우 이 사건 정산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정하고 있어 이는 거래관행에 비추어도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내지 ⑤항 생략

⑥ 을이 할부금 및 기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생략)

2. 을에게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의 판매가격} - {(자동차 반환당시의 자동차시가) + (갑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원금)}

나. 정산완료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6대의 회수로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산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는 다시, 원고가 횡편기 3G에 대한 인도를 지체함으로써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횡편기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수기인 횡편기에 락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횡편기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편직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도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납기 지체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를 잃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정산금에서 일부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

판사김광섭

- 1) 원고와 피고는 기계 4대에 대하여 기계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이와 같은 정산약정이다.
- 2)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이 사건 기계 6대에 대하여 위 기계매매계약서와 같은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 3) 일본화 7,913,275엔 (= 위 28,132,275엔 - 위 21,000,000엔)을 2019. 1. 22.자 환율로 환산한 금액
-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8. 7. 또는 2015. 12. 10.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일시에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일과 잔금 지급 완료일 사이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산금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